

# 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알리안츠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\_파생형]
2. 효력발생 예정일 : 2015.09.10
3. 변경 사유 : 1)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 
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내용 변경 (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)

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부책임용전문인력> <b>강세진</b>	<부책임용전문인력> <b>박은지</b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	추가	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 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
< 집합투자계약 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제 1 조(신탁계약의 목적)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(주)와 신탁업자인 <u>(주)한국외환은행</u> 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<u>(주)하나은행</u> ----- -----
부칙	<신설>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<母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1 조(신탁계약의 목적)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알리안스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(주)와 신탁업자인 (주)한국외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del>(주)하나은행</del> ----- -----.
제 19 조(운용 및 투자제한)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<생략> 2. 가.~다. <생략> 라. <신설> <이하 생략>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<생략> 2. 가.~다. <생략> <b><u>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u></b> <이하 생략>
부칙	<신설>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